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5 월 17 일

여 수 시 장

2024. 5. 17. 월



여수시 조례 제2089호

붙임 여수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1부

## 여수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교통 복지 지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동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린이,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린이, 청소년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 카드 사업자가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청소년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대중교통비 지원은 여수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등록된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중단)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